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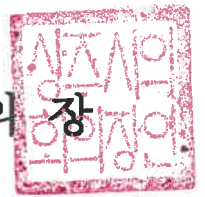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05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 예고

1. 조례명

- 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조례별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토록하여 산업 유치·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나) 이행보증금과 복구비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고,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적용

예외 (안 제18조의2 제2항제3호 신설)

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세분화(안 제27조제1항 개정)

다) 이행보증금과 복구비의 중복 계상 금지(안 제27조제2항 개정)

라)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6개월 가산(안 제27조제3항 신설)

나.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주시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안 제3~4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라) 협력체제의 구축(안 제6조)

마) 비밀준수 및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안 제7~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20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why0726@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37-78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_____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